

영조물배상공제 [어린이놀이시설] 가입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 제 사 업 부

I . 제도 개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 마련

- 매년 급증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작자, 소유자, 관리자 검사기관의 책무와 그 체계를 법제화함
-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신설을 통한 의무보험화

- 법 제21조제1항(보험가입)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제1항(보험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법 제31조제1항(과태료) 및 시행령 제18조1항(과태료 부과기준) 별표9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벌금 200만원 이하

법제화 경과내용

‘06.11.02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07.01.26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정(시행 ‘08.01.27) - ‘12.01.27부터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1.05.30	·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 교육 이행

II. 가입대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래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초등학교 및 제5호의 특수학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어린이놀이기구란?

-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IV. 보상하는 손해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의 제3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상

보상하는 손해 - 상세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신체장해(피해자 1인당)
 - 사망 : 8,000만원 한도(단, 최저금액은 실손해액 관계없이 2천만원임)
 - 후유장해 : 1급 8,000만원 한도 ~ 14급 500만원 한도
 - 부상 : 1급 1,500만원 한도 ~ 14급 60만원 한도
 - 재물손해(1사고당)
 - 200만원 한도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등

IV.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내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피보험자의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VI. 공제회비 예시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 ☐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 ☐ 초등학교 등에 있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면 적	300㎡	500㎡	1,000㎡
대인 8천, 대물 2백 구내치료비 1백/ 5백	37,100원	56,400원	112,800원
대인 1억, 대물 3천 구내치료비 3백/ 1천	63,000원	95,700원	191,500원
대인 2억, 대물 5천 구내치료비 5백/ 4천	105,500원	160,300원	320,600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있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면 적	300㎡	500㎡	1,000㎡
대인 8천, 대물 2백 구내치료비 1백/ 5백	346,900원	570,100원	1,122,200원
대인 1억, 대물 3천 구내치료비 3백/ 1천	581,100원	956,000원	1,884,000원
대인 2억, 대물 5천 구내치료비 5백/ 4천	970,500원	1,603,500원	3,175,800원

유치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 ☐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기타 유아교육기관
- ☐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 원	50명	100명	200명
대인 8천, 대물 2백 구내치료비 1백/ 1백	13,000원	26,100원	52,200원
대인 1억, 대물 3천 구내치료비 3백/ 3백	31,200원	62,400원	124,800원
대인 2억, 대물 5천 구내치료비 5백/ 5백	39,000원	78,100원	156,200원

※ 위 공제회비는 2011년 기준입니다.

VII. FAQ

1) 복지시설 등 기타시설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가입면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어린이 놀이시설의 해당 면적만 가입하면 됩니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놀이시설과 관련된 연면적을 가입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즉, 복지시설의 총 연면적이 1000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중 10에 설치되어 있으면, 10만 가입하고 나머지 시설은 기존의 복지시설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2) 이미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 어린이 놀이시설은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물의 영조물배상공제에서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금액의 한도도 기타 시설물과 다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기본보상한도인 대인8천, 대물2백보다 큰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

-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8천 외에도 1억, 1.5억원, 또는 2억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대물은 기타 영조물배상공제와 같은 보상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유치원에서 선생님들도 담보가 가능한가요?

- 유치원 선생님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손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특약)을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VIII. 가입절차

